

# 도보

제2645호 2010년 12월 17일(금)

선 람	기관의 장

##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7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3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8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4
- 충청북도고시 제2010-320호 토지세목고시(변경).....5
- 충청북도고시 제2010-321호 토지세목고시.....7
- 충청북도고시 제2010-322호 증구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8
- 충청북도고시 제2010-323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지정번호 정정고시.....9
- 충청북도고시 제2010-324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10

##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10-876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11
- 충청북도공고 제2010-877호 201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12
- 충청북도공고 제2010-878호 공시송달 공고.....16
- 충청북도공고 제2010-88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22
- 충청북도공고 제2010-882호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선정 공고.....23

☞ 뒤쪽 이어서

회 람									
--------	--	--	--	--	--	--	--	--	--

**시 군 행정**

**△ 고 시**

충주시 고시 제2010-103호 토지세목고시(변경).....27

제천시 고시 제2010-61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토지세목 고시.....29

증평군 고시 제2010-42호 증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30

진천군 고시 제2010-100호 토지세목고시.....35

단양군 고시 제2010-38호 단양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37

**△ 공 고**

제천시 공고 제2010-1312호 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42

제천시 공고 제2010-1321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44

진천군 공고 제2010-790호 진천 군계획시설(공원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45

진천군 공고 제2010-794호 진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공사완료공고·46

**기 타**

**△ 고 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 제2010-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고시·48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 제2010-4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고시·51

**△ 공 고**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10-334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4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10-335호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화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18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18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73

**고 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0-317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평지구 외 4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목 적**

노후 또는 재해취약시설을 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용수절약은 물론, 기존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보강하여 가뭄대비 능력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사업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사 업 효 과	사 업 시 행 자 (연락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5시군			3,072.4	8,634			
원평지구	청주		원평,신대, 신성,평, 정하,서천	270.0	2,000	안정적인용수공급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043)290-0560	
소태지구	충주	소태 신니 급가	단월 북탄 문송 사암	541.0	1,939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재천단양지사장 043)841-3038	
달산지구	보은	삼송 수한	달산, 우진 상가, 서원	829.3	1,152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043)540-2505	
개심지구	옥천	이원 동이	윤정,지정 평산,	399.1	1,743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043)730-2551	
상신지구	진천	진천	상신 장관 삼덕	1,033	1,800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043)530-5703	

3. 사업기간 : 2010. 12. ~ 2012. 12. 31.

4. 세부사업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에 비치된 사업인가서 및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로 문의바랍니다.

## 충청북도 고시 제2010-318호

##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내용 중 사업시행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기정	지방도	오창~살미선 (510호선) 천안~청주선 (596호선)	시점 :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산88-6 중점 : 청원군 오창읍 두릉리 산88-1	6.34	용두리	성산~두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변경	변경 없음					

## 2. 사업시행 기간

- 기 정 : 2002.12. ~ 2010. 12.
- 변 경 : 2002.12. ~ 2012. 12.

## 3. 공람장소 : 충청북도 도로과(043-220-4232)

※ 사업시행 기간 동안 설계도서 등을 비치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함

## 4. 수용할 토지의 세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및 위치도 : 변경 없음

## 5. 기타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의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0-56호, 2010.3.12.)와 관련임

충청북도 고시 제2010-320호

토 지 세 목 고 시(변경)

충청북도고시 제2010-14호(충청북도 도보 제2599호, 2010.1.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진천·음성혁신도시(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 513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사 업 명 : 진천·음성혁신도시(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 점 :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407-2(답)
  - 종 점 :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08-3(전)
3.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2. 12.
4. 사 업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
5.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조사서 (1)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소재지 별칭(시,군, 면,동리)	분할권 지번	분할권 지번	지역	면적 (㎡)	소유자		관계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오거리 559-1	559-6	도	220.0	243.0	초평면 오거리 151	김민순	미용기
2	559-2	559-6	도	71.0	72.0	초평면 오거리 151	김민순	미용기
3	559-2	559-7	도	77.0	3.0	초평면 오거리 151	김민순	미용기
4	577-2	577-6	도	3.0	3.0		김백인	미용기
5	474-3	474-7	도	2.0	1.0	서울 도림구 상계동 789-1미도아파트 101동508호	김신목	신용보증 기금 259-5
6	465-1	465-4	도	444.0	432.0	경성 관철 118	김희준	미용기
7	307-1	307-5	도	41.0	42.0	덕산면 구산리 413	백낙경	미용기
8	586-2	586-6	도	83.0	55.0	초평면 오거리 647	박수용	미용기
9	586-2	586-7	도	83.0	12.0	초평면 오거리 647	박수용	미용기
10	545-1	545-4	도	82.0	71.0		오근식	미용기
11	586-2	586-2	도	16.0	20.0		오용진	미용기
12	475-1	475-7	도	194.0	187.0	초평면 오거리 647	이경용	미용기
13	556-2	556-2	도	331.0	337.0	초평면 오거리 125	이동환	미용기
14	579-1	579-4	도	101.0	111.0	훈백면 광활리 532	임민수	미용기
15	266-2	266-6	도	107.0	105.0	진천읍 삼덕리 795	임백남	미용기
16	466-2	466-5	도	35.0	35.0	초평면 오거리 299	조자형	미용기
17	426-2	426-5	도	348.0	354.0	초평면 오거리 171	황단임	미용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조사서(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소재지 별칭(시,군, 면,동리)	분할권 지번	분할권 지번	지역	면적 (㎡)	소유자		관계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구산리 406-2	406-6	도	126.0	132.0	서울 관철 117	김희준	미용기
2	450-2	450-6	도	50.0	45.0	덕산면 구산리	박재인	미용기
3	405-2	405-2	도	921.0	922.0	진천읍 삼덕리 795	임백남	미용기

충청북도 고시 제2010-321호

토 지 세 목 고 시

충청북도 지방도 510호선(오창~살미)구간 내 문강~수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 : 문강~수회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산52-3(도)
  - 종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20-1(도)
3. 사업시행기간 : 2008. 5. ~ 2011. 4.(1,080일)
4.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5.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	분할 면지	편입 면적 (㎡)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충주	수안보	수회리	495-1	답	787	495-6	272	국(재경경제부)	
"	"	"	495-7	답	137	495-15	32	국(재경경제부)	

6. 관련고시 :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08-216호('08.10.24)

## 충청북도 고시 제2010-322호

## 증구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구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년 17일  
충청북도지사

## 1. 목 적

- 노후 또는 재해취약시설을 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용수절약
- 기존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보강하여 가뭄대비 능력 향상 도모

## 2. 사업내용

사업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사 업 시행자	사 업 효 과
	시군	면동	리동				
증구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보은	삼승	탄금	1.6	181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홍수량조절 및 수자원 효율적 이용 ○ 안전영농 기반조성

3. 사업기간 : 2010. 12. ~ 2011. 12.

4. 토지세목조서 : 없음

5. 세부 사업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에 비치된 사업승인서 및 설계도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지역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Tel. 043-540-2552 )



충청북도 고시 제2010-323호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지정번호 정정 고시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지정번호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 1. 문화재 지정번호 정정 내용

가. 문화재명 :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나. 지정번호

(1) 현행 지정번호 : 기념물 제147호

(2) 정정 지정번호 : 기념물 제149호

다.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17-1

라. 소유자 : 변동 없음

마. 관리자 : 변동 없음

#### 2. 정정 사유

가. 지정번호 부여 착오

#### 3. 지정일자 : 변동 없음(2010.12.10.)

충청북도 고시 제2010-324호

###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다음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등록일자 : 2010. 12. 15.

등록번호	등 록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 의 종류
충청북도 2010-13	2010 12. 15.	(주)이일산	김정순	충북 제천시 화산동 714-1번지	도시림등 조성

공 고

충청북도 공고 제2010-876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물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허가번호 : 충청북도 2010년 제2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친환경농식품클러스터사업단
3.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울원리 산2-1 제나호
4. 대표자 : 최 양 부
5. 설립목적 : 친환경농식품산업 발전및 농업분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도모
6. 설립허가일 : 2010년 12월 8일

## 충청북도 공고 제2010-877호

**201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 계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201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경력직)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해당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직 중인 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

**2. 계획인원 : 20명 내외****3.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퇴직예정일은 신청한 달의 말일)
  - ※ 10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는 다음 달에 심사
  - ※ 퇴직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부득이한 사유(취업, 질병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명예퇴직 가능

4.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자 확인서」를 각각 자필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 소속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

5. 대상자 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함
  -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 중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때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7.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8. 수당환수

-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9. 행정사항

-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자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지를 확인 후 도지사에게 추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

(뒤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㉔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㉕란은 해당란(□)에 V 표시하고, 특경력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㉖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㉗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㉘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V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㉙ ~ ㉛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격칠 기재함(㉙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㉜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로 하 관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㉝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V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앞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속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직(계)급 (호봉)
②소속경력직 구분(원인 기재)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경력( )
③성명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④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⑤성명	⑦주소	
⑥전면직(교재)	⑧재직기간	⑩정년일
⑦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개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절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유으로 중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 확정 경우(형량: . . . , 형량: )	
⑧장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형정년	⑨정년 (세, 년)
⑨경력 퇴직후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발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⑩정년진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일	⑪수당진구애 및 산출내역
⑪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개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절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유으로 중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 확정 경우(형량: . . . , 형량: )
	인사 담당관 (인)	연금 담당관 (인)
	감사 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의장)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과 본인인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제2항의 사유(제2의 중의 사유)를 받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대상인 지급대상인 이남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하여야 함.



충청북도 공고 제2010-8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아래와 같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5. 공고기간 : 2010. 12. 14 ~ 2010. 12. 27(14일간)
6. 의견 제출일 : 2011. 1. 11
7. 처분(예정) 대상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사유
(주)삼양	충북-주택 2004-0001	김낙중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47-3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우미주택(주)	충북-주택 2004-0009	박성문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1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주)하우스포유	충북-주택 2006-0019	이재형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40-10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신흥개발(주)	충북-주택 2008-0002	이종철	충주시 봉방동 403-11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주)알래스플래닝	충북-주택 2004-0028	신종민	제천시 영천동 1102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주)영교건설	충북-주택 2005-0034	봉명균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18-3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043-220-447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유의사항>

의견제출(청문)기한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 미제출시에는 추가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과 -  
시행일 : 2010. 12.  
수신 : (주)삼양 대표 김낙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충북-주택 2004-0001 (주)삼양 김낙중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고충동 447-3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되어 영입장지기간(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령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					
6. 의견제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일우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자우편주소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기한	2011. 1.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과 -  
시행일 : 2010. 12.  
수신 : 우미주택(주) 대표 박성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충북-주택 2004-0009 우미주택(주) 박성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되어 영입장지기간(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령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					
6. 의견제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일우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자우편주소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기한	2011. 1.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과 -  
시행일 : 2010. 12.  
수신 : (주)신흥개발(주) 대표 이종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충북-주택 2008-0002 신흥개발(주) 이종철				
	주소	충북 청주시 방방동 403-1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되어 영업정지기간(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					
6. 의견 제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일우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자우편주소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기한	2011. 1.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과 -  
시행일 : 2010. 12.  
수신 : (주)허우스포유 대표 이재형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충북-주택 2006-0019 (주)허우스포유 이재형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0-10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되어 영업정지기간(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					
6. 의견 제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일우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자우편주소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기한	2011. 1.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과 -  
 시행일 : 2010. 12.  
 수신 : (주)영교건설 대표 봉명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 자	성명(명칭)	충북-주택 2005-0085 (주)영교건설 봉명균				
	주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18-3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간에 미달(사무실) 되어 영원정기간(8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					
6. 의견제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일우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자우편주소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기한	2011. 1.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과 -  
 시행일 : 2010. 12.  
 수신 : (주)알래스플래닝 대표 신종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 자	성명(명칭)	충북-주택 2004-0028 (주)알래스플래닝 신종민				
	주소	충북 제천시 영천동 1102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간에 미달(사무실) 되어 영원정기간(8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					
6. 의견제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일우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자우편주소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기한	2011. 1.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맡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십시오.
4. 그 밖에 공명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10-880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제430099호)	중원종합기술(주) 대표 유재호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447번지(4층)	2010.12.9	신규등록

충청북도 공고 제2010-882호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선정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수종 및 수량 : 소나무 등 6종 3,778천본 (내역 불임)  
※ 수종 및 수량은 성묘기준으로 산림청 계획 변경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내에서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 선정공고 전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1ha이상의 묘목생산용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2. 16. 09:00 ~ 2011. 1. 14. 18:00
  - 접수장소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접수  
※ 우편, 팩스에 의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가.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신청서(붙임의 소정양식) 1부
  - 나. 종·묘생산업 등록증 사본 1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라. 양묘포지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지별 각1부
    - ※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소유포지의 경우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산림용 목목대행생산자 지정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소재지	시·군·읍·면	리·동	번지의 편
구도	면적	㎡	(지목별 필지별 내역 별첨)
입차	면적	㎡	(지목별 필지별 내역 별첨)
성(유)묘	구분	수량	수량
생산계획	성묘	유묘	수량
신청조건	①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②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③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의 정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④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신청일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귀하	신청인(대표자)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종·묘생산업 등록증 사본 1부.	사립자등록증		
2. 양묘포지소유(임차) 입증서류 1부.	수량		
3. 묘목생산경력 입증서류 1부.			
4. 묘목생산기반시설 현황 1부.			
본인은 이 신청처리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우량묘목생산을 위해 지적법상 밭(田) 이외의 지목은 제외 단, 산림 환경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포지 조사결과 적지판단인 경우 인정과 2010년 도 이전에 지정된 포지인 경우에는 예외

다. 양묘협회 또는 묘목생산자 단체(협회)발행 최근 3년간 묘목생산실적 증명(산림용, 일반용) 1부

바. 산림용 유묘 보유현황 1부

사. 묘목생산 기반시설현황 1부

(1) 트랙터, 조상기, 관리자,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묘목생산 기계기구보유 현황

(2) 간이온실 및 관수·관정 시설현황

5. 묘목 대행생산자 선정  
산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표에 의거 60점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6. 신청 무효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음년도 지정 신청에서 제외한다.

7. 기타  
○ 선정결과 통보 : 묘목대행생산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2011년 2월 중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산림복지팀 220-3982 문의.

붙임 2011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 계획량 1부.



### 조립용목목 대행생산자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 산림청 산림자원과-2482(2004. 6. 기)호의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비율)	점수	평가세부항목		평가 점수	비고
			기준유형			
포지규모	30 (30%)	20	차기포지			
			임치포지			
묘목(성묘) 생산실적	25 (25%)	15	산림수종			
		10	일반수종			
양묘기술력	25 (25%)	15	산림묘목 생산경력			
		10	일반묘목 생산경력			
유묘보유량	10 (10%)	10	산림용유묘			
		3	간이온실			
기반시설	10 (10%)	3	관수관정			
		4	양묘장비			
감점사유	-15	-15	연간저장묘목 생산미달			
합 계	(100%)					

※ 작성요령

1. 묘목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실적
2. 양묘기술력은 종묘생산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한 실 묘목 생산연수
3. 양묘장비는 트랙터, 조상기, 관라기,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기구를 말함
4. 감점사유는 항목본수 비율이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미달의 경우 예외

## 2011년도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 계획

(단위 : 천본)

구분	수종	묘령	용도별 구분	생산계획			비고
				계	기지정	2011년생산	
	합 계			6,245	2,467	3,778	
	소 계			3,246	1,652	1,594	
성묘	잣 나무	2-2	노지묘	300	300		
	잣 나무	2-2-3	대묘	75	75		
	소 나무	2-0	용기묘	570	570		
	소 나무	2-2	용기대묘	135	135		
	소 나무	1-1-2	노지묘	15	15		
	낙엽 송	1-1	노지묘	304	304		
	낙엽 송	2-0	용기묘	40	40		
	자작나무	1-0	노지묘	210		210	
	자작나무	1-1	노지묘	105	105		
	백합나무	1-0	노지묘	900		900	
	백합나무	1-0	클론	34		34	
	상수리	1-0	노지묘	210		210	
	상수리	1-1	노지묘	108	108		
	상수리	1-0	용기묘	240		240	
	유묘	소 계			2,999	815	2,184
잣 나무		1-0	노지묘	380		380	
잣 나무		2-0	노지묘	380	380		
잣 나무		2-1	노지묘	335	335		
잣 나무		2-2-1	대묘	96		96	
잣 나무		2-2-2	대묘	100	100		
소 나무		1-0	용기묘	640		640	
소 나무		2-1	용기묘	206		206	
낙엽 송		1-0	노지묘	250		250	
낙엽 송		1-0	용기묘	192		192	
자작나무		1-0	노지묘	120		120	
상수리		1-0	노지묘	300		300	

**시군행정**

충주시 고시 제2010-103호

**토 지 세 목 고 시 (변경)**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 주 시 장

1. 사업명 :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농어촌도로311호선)
2. 사업구간
  - 시점 :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산52-3(도)
  - 종점 :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137-5(전)
3. 사업시행기간 : 2010. 09. 17 ~ 2012. 12. 31
4. 사업시행자 : 충주시장
5.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6. 관련고시 : 노선지정(변경)공고
  - 충주시 공고 제2010-1013호 (충청북도보 제2632호, 2010.09.17.)

사용·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살미	문강	산52-5	임	207	207	(주)이레콜드웨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오피스텔 301호				
2	살미	문강	137-4	전	74	74	이원길	청원군 남이면 비룡리 161-1	전영남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33 동부센트레빌 @ 102-1801		근저당
3	살미	문강	137-5	전	441	441	이원길	청원군 남이면 비룡리 161-1				
4	살미	문강	산52-6	임	59	59	전영춘	청주시 흥덕구 평동 90				
5	살미	문강	127-8	전	731	731	장순철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92-9	남부신용협동조합	충북 충주시 용산동 613-1		근저당, 지상권
계					1,512	1,512						

제천시 고시 제2010-61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토지세목 고시

제천시 한수면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공고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서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제 천 시 장

- 1. 사 업 명 : 탄지~ 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제천시 한수면

No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상면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 계				1,104	1,104						
1	한수면 탄지리	산32-3	입	1,104	1,104		국(산림청)				

## 증평군 고시 제2010-42호

## 증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자체사업계획)수립 및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증 평 군 수

1. 명 칭 : 증평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증평군 일원(1읍 1면 7개리) 8.8km<sup>2</sup>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96호]

구 분	행정구역 면적(km <sup>2</sup> )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km <sup>2</sup> )	편입 행정구역	
증평군	81.84	8.8	7개 리	
증평읍	55.42	3.1	사곡리, 미암리 남차리, 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TEX 조성사업</li> <li>· 허브랜드 조성사업</li> <li>·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li> <li>· X-game park 조성사업</li> <li>· 울리웰빙공원 조성사업</li> </ul>
도안면	26.42	5.7	연촌리, 노암리 송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듀팜 조성사업</li> <li>·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li> <li>·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li> <li>·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발사업</li> </ul>

## 3. 목표 및 기본방향

-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미래형 지역 환경 창출

- 민간부문의 사업참여 유인이 가능한 사업발굴 및 민자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제공, 낙후도시에서 미래형 관광·휴양 도시이미지,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창출

4.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권역별	세 부 계 획	규모(m <sup>2</sup> )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9개 사업		3,489km <sup>2</sup> L = 3.7km	지역특화사업(2개사업) 관광휴양사업(3개사업) 기반시설조성사업(4개사업)	4,199
지역 특화 사업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안면 노암리>	733,721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1,161
	SOTEX 조성사업 <증평읍 미암리 제1산업단지>	56,871	태양광발전 종합연구소, 컨벤션시설 등	755
	소 계	790,592m <sup>2</sup>		1,916
관광 사업	에듀팜 조성사업 <도안면 연촌리>	2,411,291	가족호텔, 골프장 등	1,576
	X-game park 조성사업 <증평읍 울리>	110,440	X-game 대회장, 잔디스키장 등	75
	허브랜드 조성사업 <증평읍 사곡리>	81,819	허브유리온실 및 체험장 등	250
	소 계	2,603,550m <sup>2</sup>		1,901
기 사 조 사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0,235	2차선 도로 확포장 및 개착식터널 개설사업 ( L = 2.5km, B = 12m)	150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	2,445	2차선 도로 선형개량 및 통로박스 확장 ( L = 0.3km, B = 8m)	120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	9,637	2차로 진입도로 개설사업 ( L = 0.9km, B = 10m)	32
	울리웰빙공원 조성사업	52,599	생태공원, 야외공연장 등	80
	소 계	94,916m <sup>2</sup> , L = 3.7km		382





7. 사업시행방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6조 규정에 의함
8. 행위제한의 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함
9. 중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련도서 : 실음생략
10. 중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지형도면 : 실음생략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개발촉진지구 관계도서는 중평군 도시교통과 (043-835-39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

진천군 고시 제2010-100호

토 지 세 목 고 시

진천·음성혁신도시(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13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 진천·음성혁신도시(중부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km)
				시 점	종 점	
덕산	면도	구석선	102	덕산 구산 408-3	덕산 석장 462-6	2.08
덕산	리도	초덕선	201	덕산 기전 528-1	덕산 석장 334-7	0.5
초평	농도	증장선	305	초평 증석 1909-1	초평 증석 1406-2	0.5

3. 사업시행기간 : 2010. 1. ~ 2012. 12.
4.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5.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관련근거 :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 관한 재공고  
- 진천군 공고 제2010-454호(진천군 군보 제1204호 2010.6.2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사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구산리	223-2	223-3	도	136	48	박두연외4	안성 읍내 동 284				미등기
2	"	441-2	441-4	도	4,506	2,129	백영희외8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320				
3	"	495-2	495-6	전	4,763	10	유병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60				
4	"	산6-8	산6-22	임야	1,526	243	유병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60				
5	"	508-2	508-7	답	393	180	유옥순	진천군 덕산면 용릉리 594-48				매매 등록
6	"	509	509-4	답	1,648	1,206	유옥순	진천군 덕산면 용릉리 594-48				매매 등록
7	"	산6-21	산6-24	임야	89	38	유희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429-2 상진동산빌리지 205-302				
8	"	449-2	449-4	전	252	48	이규환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22-6	김종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6-20 경남연립 나-305	근저당	
9	"	436	436-4	공장	7,393	5	이미숙	진천군 운백면 태락리 170	운백농업 협동조합	진천군 운백면 봉죽리 330-3	근저당 지상권	
10	"	482-1	482-8	전	1,148	49	이순기외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10-22				
11	"	483	483-4	전	1,466	39	주문식	서울 강동 암사414-2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 파트 133-602				
12	기전리	498-11	498-16	전	436	436	조의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96				
13	석장리	391-1	391-5	전	883	243	박동우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94				
14	"	388-4	388-8	전	671	403	연병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10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0	압류	
									성남세무 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004	압류	
15	"	산94-4	산94-7	임야	106	22	연병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10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0	압류	
									성남세무 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004	압류	
16	"	산94-5		임야	212	212	연병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10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0	압류	
									성남세무 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004	압류	
17	"	산93		임야	198	198	이승우	경성 낙원				미등기

단양군 고시 제2010-38호

단양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는 단양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10년 12월 17일  
단 양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542번지,우덕리710번지 일원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매포중로3-4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단양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 = 33,009 m<sup>2</sup>

- 매포중로3-4호선 : L=1,273M, B=12.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단양군수(지역경제과장)
- 주 소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0번지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1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역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06-1	전	952	12	공	단양군			
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95-1	전	1,279	717	공	단양군			
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55-6	구	11,744	79	국	농림수산식품부			
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55-7	구	2,930	2,159	국	농림수산식품부			
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06	전	337	85	권혁규	우덕리 158			
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95	전	896	896	공	단양군			
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07	전	2,380	1,625	권혁규	우덕리 158			
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08	전	846	276	김금옥외2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246			
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10	전	4,698	3,410	권혁업	우덕리 488			
1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15	전	1,058	1,058	안상진	경북 영월군 오천읍 용덕리 341-21			
1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19	전	1,091	122	안상진	경북 영월군 오천읍 용덕리 341-21			
1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18	전	1,028	1,028	임상설외1인	충북 제천시 교동 1-1 두진 @ 104-304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역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50-1	임	26,453	854	공	단양군			
1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24	전	281	32	안승근	부산시 북구 괴정동 549-10			
1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45	임	20,628	1,462	조성귀	어외곡리 129-1			
1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28	임	929	741	조달형	우덕리 490			
1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96-1	전	2,496	253	공	단양군			
1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96	전	132	132	공	단양군			
1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39	임	60,873	1,000	안병근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8-4 삼성부촌@ 103-402			
2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94	전	714	656	권순애	인천시 남구 도화동 557-1 동원@ 5-204			
2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93	전	1,597	1,198	김금옥외2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248			
2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40	임	30,149	-	박성규외 5인	우덕리 187			편입제외
2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16	전	2,043	1,477	임상설외1인	충북 제천시 교동 1-1 두진 @ 104-304			
2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41	임	37,686	2,236	박병근	천안시 쌍용동 1233 광명@ 108-905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2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717 전	562	46	장근수	평동리 1000 한라@ 202-1309			
2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44 일	25,785	1,023	정오훈	상사리 271			
2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51 일	30,742	15	안복현	단양읍 상진리 565			
2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산74 일	110,958	207	홍종환외2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670 시점@ 12-112			
2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산78-2 일	52,998	2,644	남양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중동 551-1 성원@ 305-701			
3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6-5 답	102	102	공	단양군			
3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2-3 답	10	10	공	단양군			
3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3-2 답	3	3	공	단양군			
3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3 답	302	58	박광규	단양읍 상진리 556			
3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2 답	1,781	1,426	박광규	단양읍 상진리 556			
3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5-2 답	47	47	공	단양군			
3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878-1 도	80	80	국	국토해양부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3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5-1 도	7	7	국	국토해양부			
3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875-6 구	41	41	국	농림수산식품부			
3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1-3 답	150	8	공	단양군			
4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2-1 도	7	7	공	충청북도			
4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1-2 도	466	151	국	국토해양부			
4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1-1 답	284	175	김주석	평동리 472			
4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67-2 도	575	28	국	국토해양부			
4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67-1 도	519	5	공	단양군			
4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888 도	1,392	12	국	국토해양부			
4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2-5 도	355	2	공	단양군			
4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2-3 도	3	3	공	충청북도			
4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2-4 답	1,205	1,205	김주석	평동리 472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록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3-2	답	169	169	김주석	평동리 472		
5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3-3	답	30	30	김주석	평동리 472		
5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3-6	도	39	2	공	충청북도		
5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3-1	답	837	460	김주석	평동리 472		
5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3-4	도	251	47	공	단양군		
5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4	도	797	106	공	충청북도		
5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2-2	답	346	60	이성준	평동리 655		
5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2-4	도	416	120	공	충청북도		
5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72-2	대	340	151	김주석	평동리 472		
5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876-11	구	100	100	국	농림수산식품부		
5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7-1	답	41	41	공	단양군		
6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6-1	답	26	26	이상필	평동리 115-1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록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903	구	4,595	59	국	농림수산식품부		
6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904	도	2,818	31	국	농림수산식품부		
6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6-2	도	126	126	국	국토해양부		
6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6-3	답	71	71	공	단양군		
6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7-2	도	307	140	국	국토해양부		
6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7-3	답	103	48	공	단양군		
67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911	구	1,216	262	국	농림수산식품부		
68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7-5	답	6	6	이상필	평동리 339-1 매화연립1차 301호		
69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2-2	답	1,362	1,127	이석범외1인	평동리 587		
7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2-5	답	129	47	공	단양군		
7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2-1	답	684	17	원주이서중 증보군공파	평동리 587		
72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910	계	3,468	108	국	국토해양부		



##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7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7-7	답	3	3	이상필	평동리 339-1 매포연립1차 301호			
74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42-4	답	174	38	공	단양군			
75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8	답	479	26	공	단양군			
76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865-20	천	32,547	774	국	국토해양부			
소 계				33,009						

## 제천시 공고 제2010-1312호

## 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천시청 지역개발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7일  
제 천 시 장

## 1. 인가신청 요지

##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사업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하소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공사	제천시 하소동 165-26 일원	도 로 (중로3-35)	L=260m B=12m	L=260m B=12m	인가일 ~ 12. 7. 31	1,325	
	제천시 하소동 141-19 일원	도 로 (소로2-50)	L=162m B=8m	L=35m B=8m	인가일 ~ 12. 7. 31		

나. 사업시행자 : 제천시 천남동 내토로 295 제천시장 (변경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 붙임(변경)

라. 열람 내용 및 관련 서류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 장소 :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 043 - 641 - 5151)

나. 열람 기간 : 2010. 12. 17 ~ 2011. 1. 6 (21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변경)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하소동	165-41	전	17	17		공유지(제천시)			
2	"	165-26	전	137	137		공유지(제천시)			
3	"	165-42	전	33	33	제천시 청전동 449-1	해동건설환경 ㈜외 2인			
4	"	335-1	구	74	74		국유지(농림부)			
5	"	160-9	답	227	227	제천시	공유지(제천시)			
6	"	335-5	구	160	160		국유지(농림부)			
7	"	162-10	대	35	35	제천시	공유지(제천시)			
8	"	160-4	답	618	618	제천시	공유지(제천시)			
9	"	160-7	답	303	303	제천시 신월동 934-13	최종만 외 1인(신탁)			
10	"	336-1	도	68	68		국유지(건설부)			
11	"	156-1	대	187	187	제천시	공유지(제천시)			
12	"	335-7	구	494	356		국유지(농림부)			
13	"	334-21	도	1	1		국유지(건설부)			
14	"	145-3	대	161	138		공유지(제천시)			누락추가
15	"	146-1	대	54	54	서울 도봉구 수유동 392-24	이재수			
16	"	334-22	도	153	153		국유지(건설부)			
17	"	147-1	대	615	208	제천시 신백동 134 신백2차 덕일 한마음아파트 203- 1401	박창화			
18	"	143-10	대	61	61	제천시 하소동 143	장영식 외 2인			
19	"	143-2	대	452	73	제천시 청전동 588-2	유영상			
20	"	143-6	대	302	302		공유지(제천시)			
21	"	143-11	전	79	79		공유지(제천시)			
22	"	141-19	임	937	215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5 신공덕삼실아파트109-502	조종기 외 4인			
23	"	142-1	전	83	83	제천시 신백동 247-6	박희규			
24	"	141-18	임	3	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7	주식회사 청구주택	가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압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국잠재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5	"	141-8	도	85	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2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6	"	140-4	전	152	152		공유지(제천시)			
27	"	162-11	대	1	1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959 안강일천베르빌 503호	김중현			

## 제천시 공고 제2010-1321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제 천 시 장

읍면	도로의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 로 구 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m)	포장너비(m)	
한수	리도	하중선	한수 203	탄지리 산29	상노리 산20-1	1.2km		6.5	5.0	확·포장공사

주 : 1.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노선지정도는 축척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진천군 공고 제2010-790호

진천 군계획시설(공원,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진천군고시 제2009-13호(2009.3.6) 및 제2010-45호(2010.6.4)호로 결정(변경)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22번지 일원 진천 군계획시설(공원,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자 같은법률 제9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진 천 군 수

1. 사업장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원,녹지)
- 명 칭 : 군계획시설(공원,녹지) 사업(어린이공원, 완충녹지)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부지면적 12,236㎡(공원 7,910㎡, 녹지 4,326㎡)
- 규 모 : 어린이공원(1블럭 : 4,540㎡, 2블럭 : 3,370㎡)  
완충녹지(완충녹지 1 : 3,742㎡, 완충녹지2 : 58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 성명 : (주)부영주택 대표이사 김의기

5.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2년 12월 30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12. 17 ~ 2011. 01. 6(21일간)
- 장 소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진천읍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주소

- 열람장소에 비치

8. 기타 관련서류는 진천군청 지역개발과(☎539-3702), 진천읍사무소(☎539-42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진천군 공고 제2010-794호

진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공사완료공고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번지 일원의 진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진 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진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 나. 명 칭 : Art Valley C.C 조성사업(회원제 27홀)
3. 사업면적 및 규모
  - 체육시설 사업내용

구 분		시설내역	부지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총계	○ 사업계획면적		1,200,032	100.00%	
체 육 시 설	가. 체육시설		379,077	31.59%	
	1) 홀 수	27홀			
	2) 코스 면적		345,021	28.75%	
	3) 연 장		9,609		
	4) 연습그린(P.G)	1개소	337	0.03%	
	5) 잔디묘포장		1,442	0.12%	
	6) POND	11개소	32,277	2.69%	
건 축 시 설	나. 편의 및 관리시설	9,142.70(m <sup>2</sup> )	14,711	1.23%	9,102.44m <sup>2</sup> → 9,142.70m <sup>2</sup> (증40.26m <sup>2</sup> )
	1) 클럽하우스(C.H)	7,399.08(m <sup>2</sup> )	8,247	0.69%	
	2) 스타트하우스(S.H)	177.76(m <sup>2</sup> )	546	0.05%	137.5m <sup>2</sup> →177.76m <sup>2</sup> (증40.26m <sup>2</sup> )
	3) 관리동	1031.46(m <sup>2</sup> )	3,117	0.26%	
	4) 예지물보관창고	218.63(m <sup>2</sup> )	1,588	0.13%	
	5) 휴게소-1(T.H-1)	107.60(m <sup>2</sup> )	333	0.03%	
	6) 휴게소-2(T.H-2)	105.51(m <sup>2</sup> )	366	0.03%	
	7) 휴게소-3(T.H-3)	86.82(m <sup>2</sup> )	366	0.03%	
	8) 경비실	15.84(m <sup>2</sup> )	148	0.01%	

구 분	시설내역	부지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공 공 시 설	다. 공공시설		64,627	5.38%	
	1) 구내진입도로	L=552m, B=10m	5,732	0.48%	
	2) 우 회 도 로	L=166m, B=3~6m	527	0.04%	
	3) 카트로	L=14,091m, B=3~10m	46,685	3.89%	
	4) 주차장	352대	11,683	0.97%	
	5) 관개용 배수지	2,000ton			지하매설
	6) 오수처리장	400ton			지하매설
	7) 심정	1 식			지하매설
	8) 파고라	5개소			
	9) 가스저장소	5개소			
	10) 가압장	3개소			
	11) 주유대	1개소			
	12) 세차폐수처리장	1개소			
	13) 피뢰침	1식			
14) 라이트 설비	1식(63개소)				
녹 지 용 지	라. 녹지시설		742,085	61.8%	
	1) 원지정보전녹지		347,778	29.0%	
	2) 복원녹지		394,307	32.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남양레저 대표이사 정택충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344-3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10년도

6. 공사 완료일 : 2010. 12월

## 기 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3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고시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 1. 정화구역설정 대상(학교설립예정지)

학교 급별	설립예정 학교명	위 치	정화구역명	면적(m <sup>2</sup> )	개원예정일	비 고
유	(가칭) 발도로프유치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94	절대정화구역	13,754	2011.3	
			상대정화구역	135,190		

## 2. 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의 범위

정화구역명	범 위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고시 일자 : 2010. 12. 17(도보발행일)

##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 6.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 7. 기타사항

- 가. 본 고시사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학교설립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까지 이며,
- 나. 도지사(시장)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인·허가(신고)를 유보 조치 하도록 하거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들어 학교설립 인가 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 할 수도 있음
- 다. 정화구역예정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적용됨
- 라. 관계도면은 청주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평생교육체육과 (☎ 043-299-30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4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고시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화구역설정 대상(학교설립예정지)

학교 급별	설립예정 학 교 명	위 치	정화구역명	면적(㎡)	개원예정일	비고
유	(가칭) 분평동천주교유치원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642,643,643-2	절대정화구역	22,353	2012.3	
			상대정화구역	161,298		

2. 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의 범위

정화구역명	범 위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고시 일자 : 2010. 12 17(도보발행일)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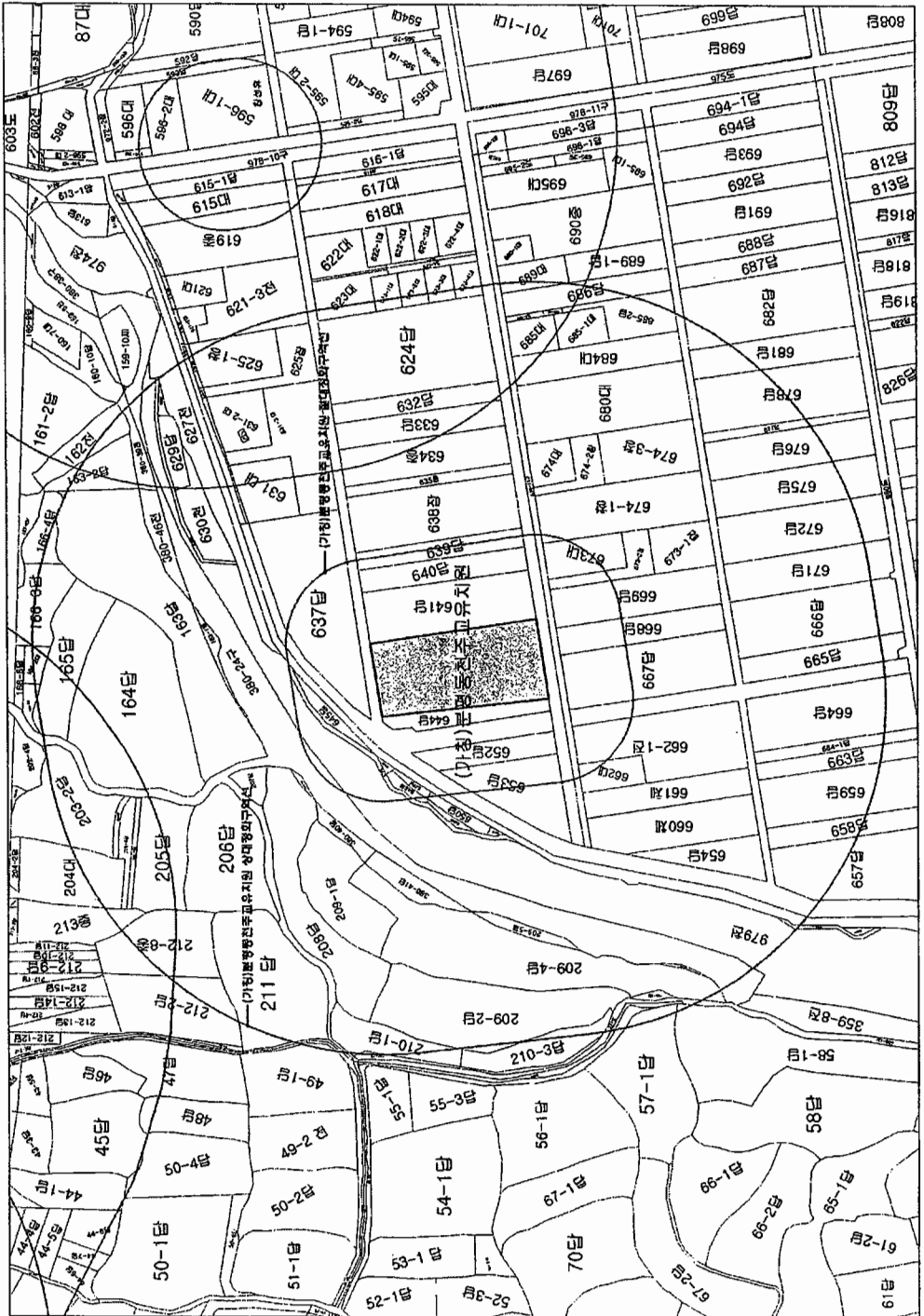
## 6.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 7. 기타사항

- 가. 본 고시사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학교설립 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까지이며,
- 나. 도지사(시장)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인·허가(신고)를 유보 조치 하도록 하거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들어 학교설립 인가 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 할 수도 있음
- 다. 정화구역예정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적용됨
- 라. 관계도면은 청주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평생교육체육과(☎ 043-299-30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칭)분평동친주교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면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0-334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 2010. 11. 1. 직제개편으로 충주학생회관이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제2관서)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제1관서)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충주학생회관”이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장)
- 나. [별표 2]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개정
- 다. [별표 5]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6조 관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재무과장, 전화번호(사용료 담당자) 043-290-2623, FAX 043 - 290 - 2744)에게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재무과

【(우)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자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자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 “지역교육청”을,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 지역교육청으로, “충청북도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을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으로 각각 한다.

제5장의 제목, 제19조 본문, 같은 조 단서,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호, 제29조 중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9조 단서, 제2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21조 제1항 본문,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원장 및 관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 중 “수영장 및 클러스케이트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다)을 “학생수영장”으로 하고,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도서관”을 “아동열람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체육시설”을 “학생수영장”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영장과 클러스케이트장”을 “학생수영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장의2(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제7장(제37조 및 제38조)으로 한다.  
제7장(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1,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제9장(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으로 하며, 제50조 중 “제39조”를 “제52조”로 한다.  
제8장(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을 제10장(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으로 하며, 제57조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제8장(제39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제39조(사용대상)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소속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근로청소년, 단재(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사용기간) ① 사용자는 관장이 정한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 사용료의 2월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충주학생회관의 사용) ①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팅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 받아 사용 한다.

②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 도서관 사용자 및 입·퇴실 방법 및 절차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3. 권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
4. 이용증 훼손·분실 되었으나 구입할 수 없는 자료의 변상액
5. 회원증 등의 훼손·분실시 재발급 비용
6.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7.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42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운영시간은 제철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43조(휴관일) ①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시설의 수리·정리·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 하는 임시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

제44조(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내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정신병자
4. 타인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교육에 유해되는 공연물을 공연할 때
6. 기타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관장은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6조(사용료)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사용료 정수액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정소년의 문예활동 등과 기관의 행사
3.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별표 2]

□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연명	사 용 구 분(기준)	징 수 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	공 연 장	오전 120,000원	○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퍼센트 가산
		오후 150,000원	
	영화음악감상실	아간 180,000원	(사용권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오전 30,000원	
		오후 40,000원	
		아간 50,000원	
	진사실 내부(1일)	20,000원	○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단, 병·난방은 제외)
		진사실 외부(1일)	
	아나(1회공연)	40,000원	○ 피아노 별도 조율사는 사용자 부담
		프로젝터(1회공연)	
	DVD녹화(1회공연)	30,000원	○ 유·무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잔잔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1개당)	
	무선마이크(1개당)	5,000원	○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물 위 한 준비시 기준사용료의 50% 정수(단,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적용)
		핀마이크(1개당)	
	보편대(1개당)	1,000원	○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드라미어스(1회공연)		30,000원	
포그머식(1회공연)	20,000원	○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포그머식(1회공연)		20,000원
합 장 대(1일)	30,000원	부속 설비	
	무용배트(1일)		70,000원
음향반사판(1회공연)	30,000원	부속 설비	
	기본조정(1시간)		30,000원
통편(2kw)(1회공연)	20,000원	부속 설비	
	무명라이드(1회공연)		5,000원
귀 맨 실(1일)	40,000원	부속 설비	
	난 방		실사용량
법 방	실사용량	부속 설비	
	실사용량		실사용량

4. 기타 교육적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행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  
용료를 50퍼센트 할인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돌봄이 1인
5. 65세 이상 노인

제4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체지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제49조(제정) 증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연장	오전 100,000원	○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용전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단, 냉·난방은 제외)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 조명사용료는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물 위한 준비시 기준사용료의 50% 징수(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오후 120,000원	
		야간 150,000원	
		전사실(1실당) 20,000원	
		피아노(1회공연) 40,000원	
		프로젝터(1회공연) 20,000원	
		DVD녹화(1회공연) 30,000원	
		유선마이크(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1개당) 5,000원	
		핀마이크(1개당) 10,000원	
		포토판(1개당) 1,000원	
		드라이버(1회공연) 30,000원	
		포그머신(1회공연) 20,000원	
		덧 마 쿠(1일) 30,000원	
		합 장 대(1일) 30,000원	
무용배트(1일) 70,000원			
음향반사판(1회공연) 30,000원			
기존조명(1시간) 30,000원			
풍관(2KW(1회공연) 20,000원			
무빙라이트(1회공연) 5,000원			
귀 빈 실(1일) 40,000원			
냉 · 난방 1회당 50,000원			
조 명 1시간당 30,000원			
수영장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단체	400원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 단체는 30인이상 적용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문 화 회	수영장 (경영활용)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감수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스킨스쿠버 제외)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지도감사 임회 시 사용 가능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일반인 2,000원	
		초등학생이하 3,000원	
		중·고등학생 일반인 35,000원	
		초등학생이하 일반인 50,000원	
		중·고등학생 일반인 1,500원	
		초등학생이하 일반인 2,500원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일반인 3,0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수영장 (다이빙장)	스킨스쿠버 170,000원	○ 공화일 및 야간(일)동계 1700여유 향제 1800여유시 1시간 3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월회비 3월이상 산하는 해당간 면제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일반인 55,000원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일반인 2,500원	
		스킨스쿠버 3,500원	
		경영활용(시간당) 200,000원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물활용) 3,000원	
부사료	부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A3-B4 80원	
		A4-B5 50원	
		A4-B5 500원	
인쇄료 (다량인쇄)	인쇄료 (다량인쇄)	복합기 500원	, , , ,
		판라 500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 OO학생회관)시설 사용신청서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계 천 학생회관	러 스케이트장	개인 500원	O 사용료는 1인 기준임 O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O 단차는 30인 이상 적용
		단체 400원	
	수영장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복사료	개인 500원	
		단체 400원	
공 통	인쇄료 (다량시료상)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후백	A3-B4	80원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신청인 소 속	기관명	전화
	주 소	FAX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일간)
사용인원	년 월 일	
사용대상		
특별첨비		
귀 원(관)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000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 OO학생회관)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수련원 및 야영장”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 등을 말한다.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제2조(정의)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제5장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제5장 학생교육문화원

제19조(사용대상)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소속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 및 관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대상) 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학생교육문화원
제20조(사용기간) ①사용자는 원장 및 관장이 정한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 및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용기간) ① 원장 원장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21조(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사용) ①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 및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교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 받아 사용 한다.	제21조(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 ① 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학생수영장

<p>②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은 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u>원장</u> 및 <u>관장이</u> 정한다.</p> <p>1. <u>도서실</u> 사용자 및 입·퇴관 방법 및 절차</p> <p>2. *3. (생략)</p> <p>4. <u>체육시설</u>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p> <p>5. (생략)</p>	<p>② <u>학생교육문화원</u></p> <p>1. <u>인동열람실</u></p> <p>2. *3. (현행과 같음)</p> <p>4. <u>학생수영장</u></p> <p>5. (현행과 같음)</p>	<p>사유로 발생하는 임시휴관일은 <u>원장</u> 및 <u>관장이</u> 정한다.</p> <p>제24조(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u>사용의 제한</u>) ① <u>원장</u> 및 <u>관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기타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	<p>원장</p> <p>제24조(학생교육문화원 <u>사용의 제한</u>) ①</p> <p><u>학생교육문화원</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학생교육문화원</u></p> <p>② <u>원장</u>은 <u>학생교육문화원</u></p>
<p>제22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와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사정을 고려하여 <u>원장</u> 및 <u>관장이</u> 정한다.</p> <p>②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에 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u>원장</u> 및 <u>관장이</u> 정한다.</p>	<p>제22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 <u>학생교육문화원</u></p> <p><u>원장</u></p> <p>② <u>학생교육문화원</u></p> <p><u>원장</u></p>	<p>제2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p> <p>제26조(사용료)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의 사용자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 <u>원장</u> 및</p>	<p>제25조(사용자의 책임)</p> <p><u>학생교육문화원</u></p> <p>제26조(사용료) <u>학생교육문화원</u></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 <u>원장</u></p>
<p>제23조(휴관일) ①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의 정기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u>원장</u> 및 <u>관장</u>이 정하되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 시설의 수리·정리·기타 부득이한</p>	<p>제23조(휴관일) ① <u>학생교육문화원</u></p> <p><u>원장</u></p> <p>② <u>학생교육문화원</u></p>	<p>제26조(사용료) <u>학생교육문화원</u> 및 <u>학생회관</u>의 사용자 징수액은 별표 2와 같다.</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 <u>원장</u> 및</p>	<p>제26조(사용료) <u>학생교육문화원</u></p> <p>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 <u>원장</u></p>

제39조(사용대상)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소속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근로청소년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사용기간) ① 사용자는 관장이 이정한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사용) ①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프장(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등과 기관의 행사
3. 외장 및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 다고 인정한 자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프 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 할인하여 징수한다.

1. ~ 5. (생략)

제29조(제정)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6장의2 외국어교육원

제36조의2(정비징수) (생략)

제36조의3(재정) (생략)

<신설>

제7장 외국어교육원

제37조(경비징수) (생략)

제38조(재정) (생략)

제8장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하는 자는 사용료를 부담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 받아 사용한다.

②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 도서실 사용자 및 임·퇴실 방법 및 절차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3.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
4. 이용중 훼손·분실 되었으나 구입할 수 없는 자료의 보상액
5. 회원증 등의 훼손·분실시 재발급 비용
6.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7.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42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43조(휴관일) ①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시설의 수리·정리·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

제44조(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내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장신병자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교육에 유해되는 공연물을 공연할 때
6. 기타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수영장과 폴리스케이트 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 할인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돌봄이 1인
5. 65세 이상 노인

제4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정되는 자

② 관장은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자로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6조(사용료)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 등과 기관의 행사
3.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기타 교육적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행사



<p>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p> <p>제49조(제정) <u>충주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u></p> <p>제9장 복지회관</p>	<p>제42조(제정) (생략)</p> <p>제8장 공동실습소</p> <p>제43조(사용대상) 공동실습소는 <u>전문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이 이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44조(사용 제한) (생략)</p> <p>1. ~ 3. (생략)</p> <p>제45조(사용자의 책임) (생략)</p> <p>제46조(사용료) (생략)</p>	<p>제50조(사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52조를 -----.</p> <p>제51조(시설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52조(사용료) (현행과 같음)</p> <p>제53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제54조(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5조(사용자의 책임) (현행과 같음)</p>	<p>제56조(제정) (현행과 같음)</p> <p>제10장 공동실습소</p> <p>제57조(사용대상) ----- <u>성화고등학교</u> ----- ----- ----- ----- -----</p> <p>제58조(사용 제한)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9조(사용자의 책임) (현행과 같음)</p> <p>제60조(사용료) (현행과 같음)</p>
<p>제37조(사용대상) ① (생략)</p> <p>② 관장은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한 타 시도 교육감과 협의 체결한 교직원인 사용하도록 허가하되, 사용료는 제39조를 적용한다.</p> <p>제38조(시설의 사용) ① ~ ② (생략)</p> <p>제39조(사용료) (생략)</p> <p>제39조의2(사용료의 감면) (생략)</p> <p>1. 2. (생략)</p> <p>제40조(사용제한) ① (생략)</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41조(사용자의 책임) (생략)</p>	<p>제42조(제정) (생략)</p> <p>제8장 공동실습소</p> <p>제43조(사용대상) 공동실습소는 <u>전문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이 이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44조(사용 제한) (생략)</p> <p>1. ~ 3. (생략)</p> <p>제45조(사용자의 책임) (생략)</p> <p>제46조(사용료) (생략)</p>	<p>제50조(사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52조를 -----.</p> <p>제51조(시설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52조(사용료) (현행과 같음)</p> <p>제53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제54조(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5조(사용자의 책임) (현행과 같음)</p>	<p>제56조(제정) (현행과 같음)</p> <p>제10장 공동실습소</p> <p>제57조(사용대상) ----- <u>성화고등학교</u> ----- ----- ----- ----- -----</p> <p>제58조(사용 제한)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9조(사용자의 책임) (현행과 같음)</p> <p>제60조(사용료)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할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결사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0.11. 1] [2010.10.29 조례 제3283호]

제 3 장 직속기관

제10절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신설 2010.10.29>

제31조의4(설치) ①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문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에 둔다. 다만,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에 둔다.

제31조의5(관장)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의6(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0-335호**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자치법 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1.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또는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개정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303호, 2010.10.27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2010.10.27 시행)」의 개정으로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에서 삭제하고 위원수를 7명에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도록 함(안 제3조)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 1 호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3조”를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유감”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세한 검토”를 “심도있는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를 “최고 점수와 최저”로, “최상위 또는 최하위”를 “최고 또는 최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나. 위원장의 경우 교육행정기관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학교는 학교장의 장을 당면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 중 불참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추가 추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위원장도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를 세로 작성한 것)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3-290-2613)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 기관·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제43조 및 제44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그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3명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하여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으로 하고,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은 분임경리관이 되며, 학교는 학교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교육	1. -----

감 소속 공무원

- 2. ~ 5. (생략)
  - 6. 해당 분야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7. 8. (생략)
- 제4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예비평가위원 선정은 분리 시행한다.
- ② ~ ④ (생략)
  - ⑤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 ⑥·⑦ (생략)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
- 2. ~ 5. (현행과 같음)
- <삭제>
- 7. 8. (현행과 같음)
- 제4조(위원의 선정 등) ① -----
- 
- 
- 
- 
- 
- <후단 삭제>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
- 20퍼센트 -----
-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발주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학교는 참석할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제9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

③

심도있는 평가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담당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한 기술능력 평가서를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위원 별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단, 최상의 또는 최하의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을 제외한다)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최

최고 또는 최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18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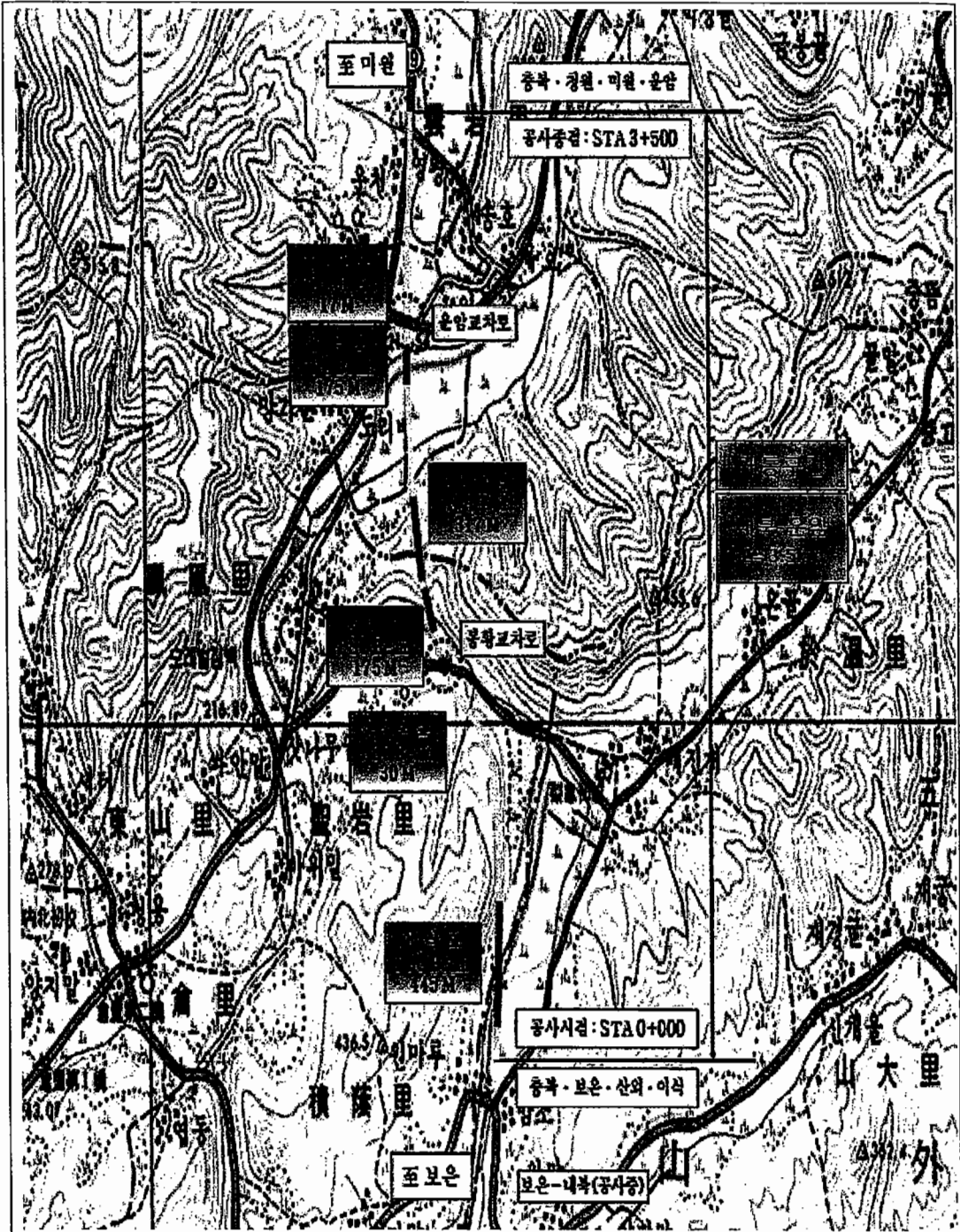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내북~운암간 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 19 호선(남해~홍천)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1(도)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678-1(도)까지(L=3.5km)
5. 사용폐지구간 : -
6. 중요경과지 :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봉황리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7. 전 용 구 간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1(도)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678-1(도)까지(L=3.5km)
8. 개시(폐지)일 : 2010. 12. 22.
9.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  
제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위치도(내북-운암, 국도19호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18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 19 호선(남해~홍천)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88-3(도)부터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 365(답)까지(L=16.4km)
5. 사용폐지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24-11(도)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655-4(도)까지(L=24.3km)
6. 중요경과지 : 보은군 보은읍, 산외면
7. 전 용 구 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88-3(도)부터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 365(답)까지(L=16.4km)
8. 개시(폐지)일 : 2010. 12. 22.
9.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